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직 역  
전화 033-240-4320

**보도자료**  
2024. 7. 25.(목)

## 전자소송으로 법원에서 99억원의 허위 지급명령을 받아낸 일당 6명 구속 기소 - 법원의 수사의뢰를 받아 검찰 직접수사로 전원 구속 기소-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춘천시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약 10개월간 직접 수사를 통하여, 피해 회사와 동일한 상호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피해회사에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처럼 계좌내역을 조작 후 '물품을 못 받았으니 이미 지급한 대금 99억 원을 반환해 달라'고 허위 전자소송을 제기하여 99억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기해 피해회사 24개로부터 예금 16억 6천만원을 추심받아 편취한 일당 6명을 '24. 5. 7.부터 오늘(7. 25.)까지 4회에 걸쳐 전원 구속기소**하였습니다.
- 검찰은 춘천시법의 수사의뢰를 받은 즉시 전담수사팀을 구성, 수사에 착수하여, 피고인들이 수개월에 걸쳐 유령법인 설립, 계좌내역 조작, 소송수행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전국 법원에서 28개의 피해회사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고 피고인들을 추적하여 전원 구속**하였습니다.  
※ 피고인들은 본건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 분담을 해준 총책 A, 조직원 모집을 한 중간관리자 B,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계좌내역을 만든 E·F, 피해회사를 상대로 허위 물품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채권자 역할을 한 C·D로, 검찰은 압수 수색 등 면밀한 수사를 진행한 끝에, C·D를 먼저 직접 구속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총책 A를 포함한 나머지 공범들까지 모두 구속하였습니다.
- 본건은 **검찰 직접수사를 통해, 전자소송 제도의 편의성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엄정·신속히 대응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한 사건으로,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는 재산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1

## 피고인

순번	피고인	역할
1	A (남, 46세)	- 범행 전반 계획, B를 통해 범행 지시
2	B (남, 23세)	- C, D, E, F 모집, 구체적 범행 지시
3	C (남, 24세)	- 지급명령 사건의 채권자 역할
4	D (남, 22세)	- 지급명령 사건의 채권자 역할, 일부 유령법인 설립
5	E (남, 22세)	- 유령법인 설립 및 법인 계좌 개설, 허위 거래내역 형성
6	F (남, 21세)	- 유령법인 설립 및 법인 계좌 개설, 허위 거래내역 형성

# 2

##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3. 5. ~ 11. 피해회사와 동일한 상호의 유령법인 10개를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해 마치 피해법인에 물품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고 이를 근거자료로 하여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했음에도 물품을 받지 못했으니, 대금을 반환해 달라”며 전자소송을 통해 28개 피해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채권금액 합계 99억원 상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추심할 금액 합계 66억원 상당)을 받아 16억 6,000만 원을 실제로 추심함으로써 사기,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금융실명법위반

※ 10개 유령법인의 상호를 변경하여 총 28개 피해회사를 상대로 범행함

# 3

## 수사 경과

- '23. 10. 11. 춘천지법, 수사의뢰 - 검찰 직접 수사
- '23. 12.~2. 전국 21개 법원 압수수색, 관련 계좌 압수수색 등
- '24. 4. 11. 피고인 C, D 구속 ('24. 5. 7. 기소)
- '24. 4. 26. 피고인 E 구속 ('24. 5. 21. 기소)
- '24. 5. 4. 피고인 F 구속 ('24. 5. 21. 기소)
- '24. 6. 20. 피고인 B 구속 ('24. 7. 12. 기소)
- '24. 7. 9. 피고인 A 구속 ('24. 7. 25. 기소)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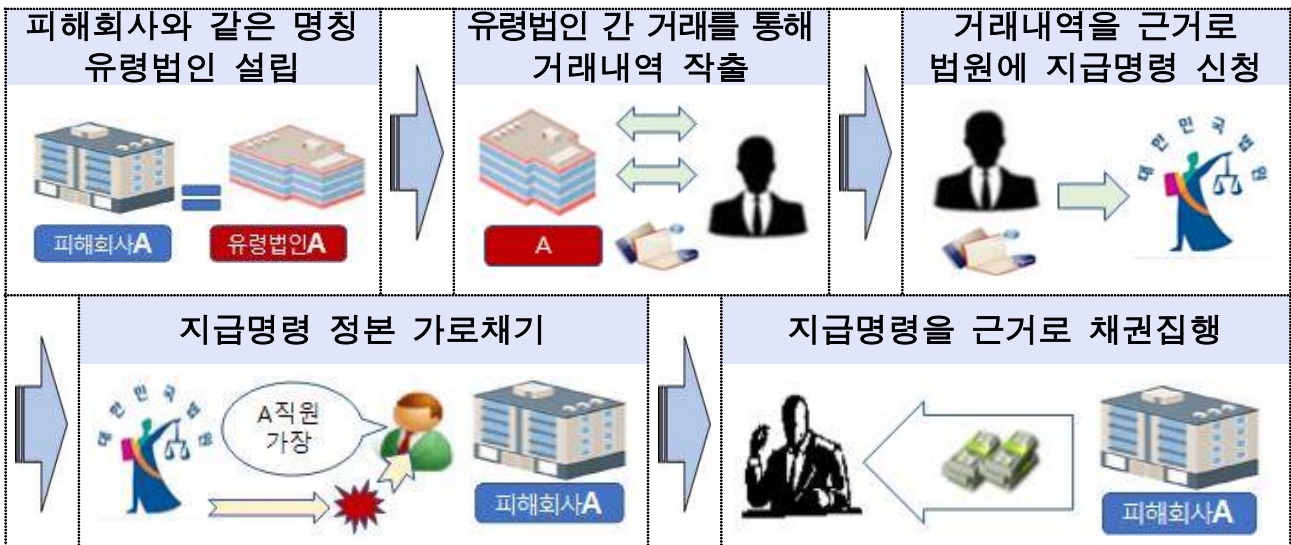
## 수사의 의의

검찰은 피고인들이 각각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행을 통해** 수개월에 걸쳐 전국 법원에서 28개 피해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액 합계 99억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근거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실제 16억 6,000만원 상당을 추심**받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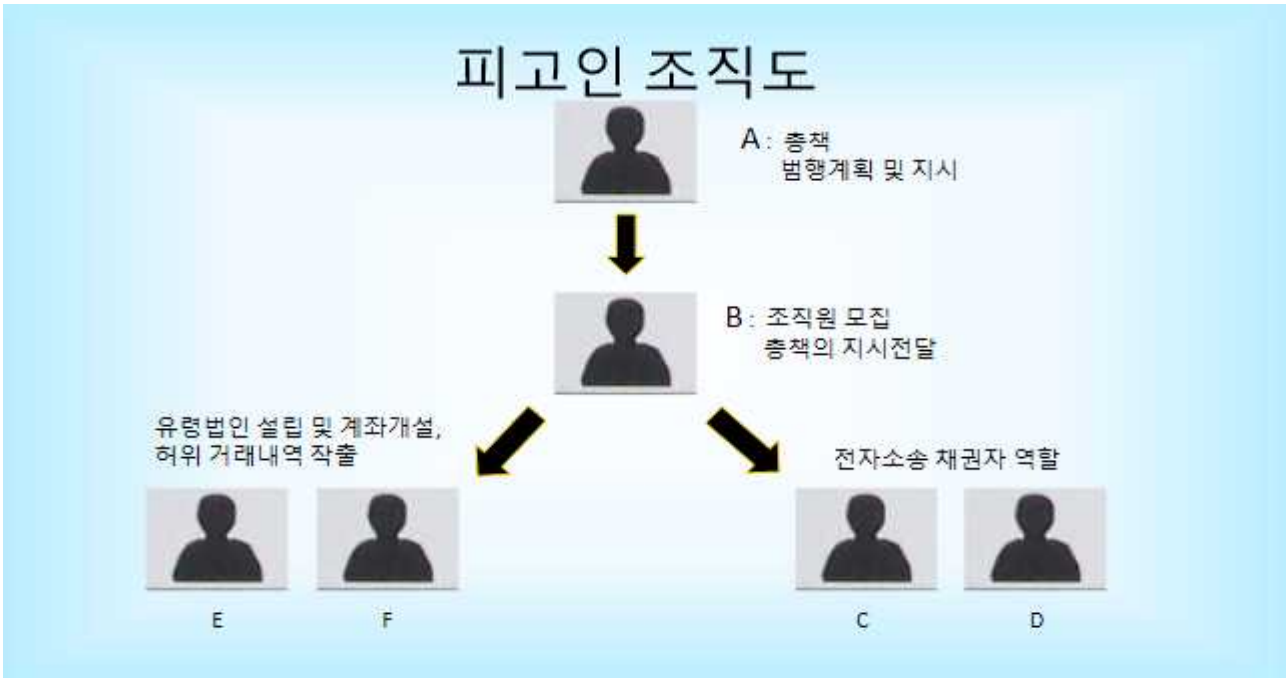
- 춘천지법은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지급명령 사건 중 일부 채무자의 민원을 통해 C, D의 소송사기를 의심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검찰은 C, D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조회하여, 이들이 **전국 법원에서 피해회사 28개를 상대로 채권액 합계 99억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전자소송은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으로, 문서제출 부담의 감소, 비용 절감, 절차의 신속성 등이 특징임

- 피고인들은 피해회사 계좌의 예금을 추심명령을 통해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해회사와 동일한 상호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다음 C, D 명의 계좌에서 **유령법인 명의 계좌로 500~600만원으로 송금과 출금을 반복한 뒤, 송금내역만을 편집**해 마치 피해회사에 거액의 물품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만들어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했는데 물품을 못 받았으니 대금을 반환해 달라”**며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피해회사 사무실 근처에서 미리 대기하다가 **피해회사 관계자 행세를 하며 송달된 지급명령 정보를 가로채** 피해회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급명령을 확정시켜, 피해회사 계좌에서 채권추심을 가장해 돈을 빼낼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일부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그 실체를 쉽게 파악할 수 없도록 C, D만을 소송당사자로 내세우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하였으나, 검찰은 압수수색, 계좌내역 분석, 전자소송 접속 IP 확인 등을 통해 다른 공범의 존재를 파악하고, C, D 검거 사실을 알고 잠적한 상선 공범 A, B를 수개월간 끈질기게 추적하여 일당 전원을 구속하고, 추가 범죄를 방지하였습니다.



- 춘천지검은 형사2부 1개 검사실 및 수사과 수사관(8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관련 법리 검토, 압수수색 실시, 계좌내역 분석 등 유기적 협력을 통해 ① 위 지급명령 사건에 제출된 송금내역이 허위로 만들어진 사실, ② 지급명령 사건의 채권자인 C, D와 유령법인을 설립한 E, F가 모두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초반인 점을 확인하고, ③ 이 사건은 유령법인 설립, 전자소송 등 상당한 법률지식이 필요한 범행임을 고려하여 C, D, E, F 외에 배후 공범의 존재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여 총책인 A, 중간관리자인 B까지 밝혀냈습니다.
- 춘천지검 수사과는, A, B가 공범 체포 후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운행하던 자동차도 처분하는 등 잠적하자, A, B의 과거 통화내역 및 계좌내역을 분석하고, 이들이 이용한 미용실이나 숙박업소 등 탐문, A, B가 새로 개통한 것으로 확인되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 추적, A, B의 지인에 대한 협조 요청, 동선 파악 및 현장잠복 등 다각도로 그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개월간 A, B를 추적하여 검거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지급명령 신청의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계좌거래내역에 거래 상대방인 법인의 상호만이 표시되는 점, 피해회사 관계자 행세를 하면 지급명령 정본을 쉽게 송달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므로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 조사 결과, 피고인들은 계좌거래내역의 거래상대방란에 피해법인의 상세한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점, 피해법인 사무소 소재지 인근에서 미리 대기하다 지급명령 정본을 배달하는 집배원에게 피해법인 관계자 행세를 하면 별다른 본인확인 절차 없이 이를 수령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범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습니다.
-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지급명령 사건 진행 및 지급명령 정본 송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전달하여 지급명령 관련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 5 향후 계획

-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는 재산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이 사건에서 확인된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유사 범죄에 재사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해산명령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